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종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68

발의연월일: 2024. 9. 5.

발 의 자: 장종태·김선민·김남희

이수진 · 김 윤 · 오세희

강준현 • 박희승 • 문진석

복기왕 · 조승래 · 이원택

소병훈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이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의학,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·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한편,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데,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이 지역·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,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·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, 제14조 등).

법률 제 호

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 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 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중 "보조"를 "보조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정부는 대학병원의 사업과 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출연, 보조 및 지원의 기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.

제17조 전단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8조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9조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 제21조제2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조(정관) ① (생 략)	제4조(정관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	2		
때에는 <u>교육부장관</u> 의 인가를	<u>보건복지부장관</u>		
받아야 한다.			
제8조(임원) ① (생 략)	제8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	②		
이 되며, 이사는 다음 각 호에			
해당하는 사람(이하 "당연직			
이사"라 한다)과 이사회의 추			
천을 받아 <u>교육부장관</u> 이 임명	<u>보건복지부장관</u>		
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			
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			
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			
이 풍부한 외부 인사가 1명 이			
상 포함되어야 한다.		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
④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	4		
아 <u>교육부장관</u> 이 임명한다.	<u>보건복지부장관</u>		
⑤ ~ ⑦ (생 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		
제10조(대학병원장) ①・② (생	제10조(대학병원장) ①・② (현		
략)	행과 같음)		
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	3		
아 <u>교육부장관</u> 의 제청으로 대	<u>보건복지부장관</u>		

통령이 임명한다.

④ ~ ⑦ (생 략)

- 제14조(출연 또는 보조) ①・② 제14조(출연 또는 보조 등) ①・ (생 략)
 -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 | ③ 정부는 대학병원의 사업과 ·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(借 款)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 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. 다만,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17조(사업계획 등의 보고) 원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대학병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 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.

- ④ ~ ⑦ (현행과 같음)
- - ② (현행과 같음)
- 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출연, 보조 및 지원의 기준 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 다.

제17조(사업계획 등의 보고) ----

----보건복지부장관-----

제18조(결산서의 제출)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·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한다.

제19조(감독) <u>교육부장관</u>은 대학 병원을 감독하며, 필요한 사항 의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
제21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교육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제18조(결산서의 제출)
<u>보건복지부장관</u>
<u></u>
제19조(감독) <u>보건복지부장관</u>
<u>,</u>
제21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
보건복지부장관